

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	
	(전화번호 :)	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③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(= ⑩)		

가.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

⑥ 영상콘텐츠 구분 (㉠, ㉡, ㉢)	⑦ 영상콘텐츠 명칭	⑧ 방송(상영, 시청에 제공)된 날	⑨ 세액공제 대상여부	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	⑪ 국가 보조금 등	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	⑬ 세액공제 대상금액 (⑩ - ⑪ - ⑫)
		. . . ~ . . .	여, 부				
		. . . ~ . . .	여, 부				
		. . . ~ . . .	여, 부				
계							

나. 공제세액 계산

기업 구분	⑭ 세액공제 대상금액 (= ⑬)	⑮ 공제율	⑯ 공제세액 (= ⑭ × ⑮)
중소기업		10%	
중견기업		7%	
일반기업		3%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“⑥ 영상콘텐츠 구분”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“㉠ 방송, ㉡ 영화, ㉢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”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.
- “⑦ 영상콘텐츠 명칭”란은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고, “⑧ 방송(상영, 시청에 제공)된 날”란은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.
- “⑨ 세액공제 대상여부”란은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(상영, 시청에 제공)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“여”에 표시하며, ㉠ 방송 또는 ㉢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“여”에 표시합니다.
 -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
 -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
- “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”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,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.
 - 광고 및 홍보비용, 접대비
 - 「소득세법」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「소득세법」 제29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
 -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[위 1), 2)의 금액은 제외합니다]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
- “⑪ 국가 보조금 등”란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.
- “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”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9제8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(같은 조 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제외합니다)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.